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255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200	임이자의원	2024. 6. 7.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 축조심사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2202292	정 부	2024. 7. 2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2204655	김소희의원	2024. 10. 11.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11.28)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 축조심사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상정, 축조심사, 의결
2208618	박홍배의원	2025. 3. 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3.14)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6.)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9. 19.)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 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하였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음.(안 제35조 등)

3.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의 보편적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통합고용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 법 시행 1년 후 법 시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의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에 관한 부분의 입법을 추후 검토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2조의3(중전의 제22조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제22조의5(중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중전의 제22조의4)제2항제2호 중 “제2조제

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

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9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연체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기간 분을 계산할 때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
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
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
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

-----제2조 제8
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
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
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도

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용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u>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u> <u>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u> <u>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u>
<u>제22조의2</u>(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u>제22조제3항</u>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u>제22조의3</u>(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u>제22조제4항</u>----- ----- ----- ----- ----- ----- ----- ----- -----.
<u>제22조의3</u>(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생략)	<u>제22조의4</u>(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현행 제22조의3과 같음)
<u>제22조의4</u>(장애인 표준사업장의	<u>제22조의5</u>(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u>제2조제8호</u>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2조제8호</u>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략) ③ ~ ⑥ (생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략)	인증 및 인증취소) ① ----- ----- -<u>제2조제8호</u> 및 <u>제22조의2(일반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주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u>----- -----.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조제8호</u> 및 <u>제22조의2(일반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주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u>-----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22조의 4제1항</u>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 ⑪ (생략)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u>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u>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④ (생략) <u><신설></u>	④ -----<u>제22조의 5제1항</u>----- ----- ----- ----- ----- -----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일 단위로 계산하여 -----. ④ (현행과 같음) <u>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u>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	--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2조제4항 및 제5항-----

 -----.

③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22조의4제5항</u>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u>제22조의4제6항</u>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생 략) ② ~ ⑤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 ----- -----. 1. <u>제22조의5제5항</u>----- ----- ----- 2. <u>제22조의5제6항</u>----- ----- -----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